

2025년 내수면 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사업 신청 공고(2차)

「수산업법」 제93조 및 「내수면어업법」 제17조, 2025년 내수면 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차 사업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6월 9일

북 구 청 장

1. 사 업 명 : 2025년 내수면 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사업(2차)
2. 사업내용 : 내수면 노후 어선의 기관 및 장비(양망기) 교체 비용 60% 지원
3. 신청자격 : 어선 등록·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하고 노후기관 및 양망기 신규 설치 (교체) 희망 어업인

※ 지원 제외 대상

- 사업신청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내수면어업법, 어선법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(과징금 대체, 과태료 부과도 포함)
- 상기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·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
-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한 어선
- 사업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(선체·기관)의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은 자
- 가족(부부 등)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받는 자

4. 사업안내

- 가. 지원품목 : 어선의 기관 및 장비(양망기)
- 나. 지원내역 :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의 60% 지원
- 다. 지원조건 : 시비 30%, 구비 30%, 자부담 40%

※ 1척당 기관 최대 20백만원/ 양망기 최대 4백만원 (자부담비 포함)

라. 사후관리 :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기간 내 재산처분제한

재산명	사후관리기간	처분제한기준	비고
디젤엔진	설치일로 부터 10년간	매각,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등	조달청 내용연수 준용
가솔린엔진	설치일로 부터 11년간		
선외기모터	설치일로 부터 7년간		
양망기	설치일로부터 5년간		

5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가. 신청기한 : 2025. 6. 25.(수) 18시까지

나. 신청장소 : 북구청 일자리경제과(제2별관1층)

다. 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, 선적증서(사본), 어업허가증(사본), 어선검사증서(사본)

6. 사업자 선정 : 사업시행지침 참고(예산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예정)

7. 기타사항 :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2025년 내수면 어선 기관교체 지원사업 지침 참고 및 북구청 일자리경제과(309-4474)로 문의

붙임 1. 사업신청서 1부.

2. 2025년 내수면 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사업 지침 1부.